

Q

금번 저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재선임을 하여야 하는데 인근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겸임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인근현장이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전관리자 겸임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된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장소적(울타리 기준)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를 독립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안전관리자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현장과 같이 겸임하고자 하는 다른 현장이 상당히 떨어진 거리(전화통화 결과 확인)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겸임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Q

저희 회사는 2000년말 S등급으로 평가되어 작년 FSM 이행실태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FSM 등급 상향조정의 자격이 주어져서 FSM 이행능력 재평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이전에 FSM 대상업체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던데 그러면 당사는 FSM 이행능력 재평가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을 동시에 수검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중점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등급 또는 S등급은 3년마다 정기평가(이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2000년 말에 이행능력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003년 말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 등급신청한 이행능력평가에서 P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어도 내년 말(2003년)에 정기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오니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A

노동부 본부의 일정상 FSM 이행능력 재평가는 월드컵 이후 실시할 예정이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은 5월말 이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행능력 재평가와 예방점검은 별도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는 재평가와 관계없이 최초 평가일로부터 3년후 실시하는 것이므로 2003년에 정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행능력 평가시 준비사항은 노동사무소에서 FSM 이행실태 점검에 준하여 각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상시고용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상시근로자는 연구원 및 기타 관리사무원도 상시고용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2. 제조부의 파견근로자도 상시고용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1.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 중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의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교육시 근로자 교육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수첩, 볼펜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안전교육비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재해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으나 행사사진이 없으면 정산이 않되는 지요. 참고로 행사물품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명세서에 해당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첩, 볼펜 등의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 여부는『건설업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의거 안전교육시 안전교육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수첩 및 볼펜 등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해 안전기원제 행사시 소요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하여는 행사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없는 바 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의거 정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